

***** 공지사항 *****

한·멕시코 통상장관회담 성과 안내

제1차 한·멕시코 통상장관 회담('94. 5. 16~5. 17)이 멕시코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통상현안 사항과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되어 동회담의 성과를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장관 회담 주요 의제

- 양국간 교역 및 투자동향 평가
- 합작투자 확대 방안(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멕시코 투자유치 계획 등)
- 유관기관간 협력 확대(Match-making conference 등)
- 시장접근 확대
 - 반덤핑, 자동화 투자제한, 수입상품 사전가격 심사 등
- APEC, Post-UR에서의 협력 방안 등

2.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93년 3,340억불(1인당 GNP, 4,325불), 인구 8,500만명으로 '86년 GATT가입이후 견실한 경제성장과 무역증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가 급증 추세에 있다. NAFTA 발효에 따라 멕시코 북미시장의 전진기지로서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교역 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APEC 가입과 함께 '94. 5. 18. OECD에 정식 가입)

3. 주요활동 및 성과

1) 한·멕시코 통상장관 회담

한국과 멕시코가 각각 미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호 진출 거점으로 활용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NAFTA 대응을 위해 현지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흡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노무관리 및 세제성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조속히 서명키로 합의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NAFTA 국가와 동등한 투자보호를 약속하되 이를 반영 멕시코 측의 초안을 기초로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민간업계의 투자지원을 위해 7월 Mexico City에서 「투자알선회의(Match-making Conference)」를 개최키로 했으며, 멕시코의 대한 투자유치단 파견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 사전가격심사제도 표준규격제도 및 통상절차 등 비관세 장벽 완화도 요청했다.

2) 살리나스(Salinas) 대통령 예방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APEC, OECD 등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우리기업의 對멕시코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3) 텔로(Tello) 외무장관 면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의 가입경험을 최대 활용토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UN 안보리 비상상임이사국 진출을 최대 지원키로 했다.

4) 제17차 한·멕시코 민간경협위 개최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하여 투자 및 교역확대 여건을 점검하며 전자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상공자원부장관 치사를 통해 신경계계획 설명 및 양국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4. 평가

1) 관찰 및 평가

우리측은 NAFTA 발효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에 대응, 멕시코에 대한 교역 및 투자

공지사항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멕시코 측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아태지역 진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 협력강화를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간 교역 및 투자 대폭 확대, 장기적으로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키로 합의했으며 미주지역 진출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2) 향후 대책

국내업체의 멕시코 진출에 대한 관심 고취 및 현지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및 종합적인 對멕시코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 미시시피주 Kemper Country 공장 무상 임대 안내

미국 미시시피주 Kemper County는 미국 및 중남미 시장을 목표로 미시시피주에 진출 의사가 있는 한국의 유망한 전자부품 중소기업에게 공장을 무상 임대하고자 본회에 제의 해와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행정 지원을 한다고 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희망업체는 본회 국제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지 역 : 미국 미시시피주 Kemper County

나. 면 적 : 10,000 square feet
(≒277평)

다. 금융지원 : 장비 및 기계에 대한 융자도 가능

라. 문 의 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국제부 통상과 (Tel : 555-6187)

한국 전자산업 현황과 국제화 방향 워크샵 안내

1. 목적

- 한국전자산업에 대한 대외인식 제고 및 국제화 방향 모색
-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현황 및 개선 방향
- 전자산업 국제 협력 방안

2. 기간 : '94. 6. 16(목)~6. 17(금)(1박2일)

3. 장소 : 경주 힐튼호텔

4. 참가비 : ₩200,000 (숙식비 및 교통비 등 일체경비 포함)

5. 참가대상 : 국내외 기업체, 주한 외국공관, 유관기관 등(30여명)

6. 참가비 납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구좌번호 : 196-05-066523, 상업은행)

7. 사용언어 : 영어(전일정)

8. 신청기한 : '94. 6. 10(금)까지

9. 문의처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국제부 통상과
Tel : 555-6187, 553-0941/7,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안내

공업진흥청에서는 품질경영(QM)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수단으로 전산업체에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품질의 달』에 품질경영 우수기업체 및 유공자를 선발 포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포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품질경영 활동이 우수한 업체 유공자를 추천코자 품질경영상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본회 가전과로 문의 바람
(TEL : 553-0941/7)

공지사항

종 류	신청기한	신 청 자 격
1. 공 장 혁신상	6. 1~ 6. 30	IE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올린 우수기업체(또는 공장, 사업부)
2. 가 치 혁신상	6. 1~ 6. 30	VE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기능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상품의 가치향상 등에 현저한 성과를 올린 우수기업체(또는 공장, 사업부)
3. 설 비 관리상	6. 1~ 6. 30	TPM에 의한 설비효율의 고도화로 생산성 향상, 낭비요인 제거, 불량예방 등에 현저한 성과를 올린 우수기업체(또는 공장, 사업부)
4. 물 류 혁신상	6. 1~ 6. 30	물류관리 활동을 다년간 추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현저한 성과를 올린 우수기업체(또는 공장, 사업부)
5. 유공자 표 창	7. 1~ 7. 31	품질경영(관리)상 수상업체, 품질경영 100선, ISO 9000 인증업체, 등급공장 종사자와 대학이나 품질경영 추진본부에 소속된 전문가 중 품질경영의 보급·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자
6. 품 질 명 장	7. 1~ 7. 31	생산현장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분임조활동 경력이 5년이상인 현장근로자 및 현장지도사원으로서 직장 동료 근로자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분임조활동, 제안활동 및 공정 또는 품질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
7. 문헌상	8. 1~ 8. 31	QM, IE, VE, TPM 등의 과학적 기법의 개발과 그 활동에 관한 한계 및 산업계의 우수한 연구논문, 저서 등 문헌
8. 한 국 품질대상	9. 15 까지	품질경영상 수상후 3년이상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상의 품질과 완벽한 품질경영 체제를 갖춘 우수업체로서 당해년도 품질경영 100선에 선정된 업체
9. 품 질 경영상	9. 15 까지	전사적 품질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품질보증, 품질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올린 우수업체로서 당해년도 품질경영 100선에 선정된 업체

과세 및 통계용 환율산정방법 변경 안내

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통

계를 위하여 매주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수출입신고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은행에서는 미화의 경우 전단위까지 산정·적용하고 있으나(예 : 미화 1불당 810.18원), 과세 및 통계목적상의 환율은 적용면에서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단위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단위로 산정(예 : 미화 1불당 810원)하여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등으로 계산상이 어려움이 대폭 축소됨으로서 '94. 7. 1부터는 외국에서와 같이 은행에서 적용하는것(예 : 미화 1불당 810.18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율을 산정(예 : 미화 1불당 810,18원)하고 물품의 수출입신고시 이를 적용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회 회원사중 환율적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프로그램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환율 산정 방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의 현행 표기방법과 변경된 표기방법의 예〉

통 화 법	표기방법(외국통화 1단위당 원)	
	현행표기방법	변경된 표기방법
미화(USD)	810	810.18
영연방화(GSP)	1226	1225.68
독일화(DEM)	491	490.69
캐나다화(CAD)	558	588.16
프랑스화(FFR)	144	143.60
이태리화(ITL)	0.51	0.5111
스위스화(CHF)	578	578.01
홍콩화(HKD)	105	105.27
스웨덴화(SEK)	106	106.47
호주화(AUD)	580	580.12
덴마크화(DKK)	126	125.64
벨기에화(BEF)	24	23.88
오스트리아화(ATS)	70	69.77
노르웨이화(NOK)	113	113.33

***** 공지사항 *****

통 화 법	표기방법(외국통화 1단위당 원)	
	현행표기방법	변경된 표기방법
노르웨이화(NOK)	113	113.33
네델란드화(NLG)	438	438.15
일본화(JYE)	7.96	7.9627
사우디화(ARI)	217	216.90
쿠웨이트화(KUD)	2737	2737.14
바레인화(BHD)	2158	2157.53
아랍에미레이트화(ADH)	221	221.48
싱가폴화(SGD)	523	523.14
말레이시아화(MYR)	305	305.28
스페인화(ESP)	6.00	6.0019
핀란드화(FIM)	152	151.64
뉴질랜드화(NZD)	469	469.23

※ 소숫점이상은 원, 소숫점이하는 전단위

한·멕시코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상담회 안내

1. 일 시 : 1994. 7. 5~7. 8(3박4일)
2. 장 소 : 멕시코 산업은행 강당
3. 참가신청기간 : 1994. 5. 10(화)한
4. 참가대상업체 : 대멕시코 합작투자 및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5. 주 관 : KOTRA, 멕시코 산업은행 (NAFIN) 공동
6. 후 원
 - 한국 측 : 주멕시코 대사관, 산업은행 멕시코 사무소 및 수출입은행 멕시코 사무소
 - 멕시코 측 : 멕시코 상공부, 멕시코 무역 진흥은행(BANCOMEXT)
7. KORTA 지원사항
 - 멕시코 카운터 파트너 발굴 및 상담일정 주선
 - 산업시찰에 따른 교통편 및 안내
 - 통역 등 체류기간중 활동지원
 - 업체별 상담부스 설치 제공
 - 호텔 특별할인 및 상담장 교통편 제공

8. 상담회 개최 일정

일자	시 간	주 요 행 사
7. 5(화)	09:00~10:00	참가업체 등록
	10:00~12:00	세미나 개최 -양측 주요인사 환영사 -양국의 문화 소개(비디오) -멕시코 경제 및 투자정책 설명
	13:00~15:00	멕시코 산업은행 주최 오찬
7. 6(수)	15:00~19:00	업체별 개발상담(장소: 업체별 개별 부스)
		업체별 개별상담 및 멕시코업체 공장 방문
7. 7(목)		업체별 개별상담 및 투자환경조사
7. 8(금)		산업시찰

9. 문의처 : KOTRA 지역조사부 미주과
(TEL : 551-4353, FAX : 551-4354)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고시 안내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57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994. 5. 14
상공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5호 중 “제3국에서 조달하여” 를 “외국에서 조달하여”로 하고, 동조 제11호 중 “제3국도착수입”을 “외국도착수입”으로 한다.

제3-1-1조 제1항 중 “제2항의”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3조 제1항 중 3월 이내를 6월 이내로 한다.

제3-2-4조 제1항 중 3월이내를 6월이내로 한다.

제3-2-12조 제목 “제3도착수입승인”을 “외

***** 공지사항 *****

국도착수입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제3도착수입은"을 "외국도착수입은"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자가 위탁가공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제3-2-12조 제1항 제5호 중 수출한 자의을 수출한 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하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승인을 얻은 기계·설비 등을 수출국 현지에서 시험, 검사할 목적으로 제3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물품

제3-2-12조 제2항 중 "제3국도착수입"을 "외국도착수입"으로 하고, "제3국에서 수입 물품을 인수하였음을"을 "외국에서 수입물품을"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3국도착 수입의 경우에는"을 "외국 도착수입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3-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자의 변경은 수입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제3-4-2조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5-2조 제2호사 중 "(본지사간의 거래로서 D/A, D/P방식 수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3-7-3조 중 제8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분할·재포장에 준하는 단순 제조·가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특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라벨

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

3. 단순한 건조, 세척, 절단, 분할포장, 조립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4.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단순 혼합작업. 다만, 그 결과 얻어진 상품의 특성이 혼합되기 이전의 물품특성과 본질적으로 동종동질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7-3조 제9항 중 "제8항의"를 "제9항의"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제3항 내지 제8항의"를 "양도하는 경우(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제3항 내지 제9항의"로 하며, 동조 제12항 중 "제11항의"를 "제12항의"로 한다.

제3-7-8조 제1항 중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수입면허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한다.

제4-0-4조 제2항 제1호 중 "상역국장"을 "무역국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중 "통상협력국장"을 "통상정책국장"으로 한다.

제5-3-7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가 제작도면이나 자재산출대장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제출한 내역에 의하여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4-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업

(별표3-2) 제6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설립자가 법인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한함)이 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

(별표3-2) 제7호 자목 중 "다음 각목에"를

***** 공지사항 *****

“다음에”로 한다.

(별표3-2) 제7호 자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수요의 학술조사연구 업무용으로 반입되는 외국간행물 및 마이크로필름 등의 물품(그 가액이 미화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것에 한한다)이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용으로 반입되는 음반,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정보매개물(연예, 흥행관계의 것을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타 고시의 개정)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27호, '93. 12. 31) 중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입승인시 수량 확인) 수입선다변화품목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국산개발 소요부품의 수입승인시 추천서에 첨부된 수입승인 확인서에 수입승인 일자, 수량 등을 기재하여 총 부품수입승인 수량이 추천수량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제 특허 세미나 개최 안내

본회는 UR협정 타결을 기점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특허문제를 미국 특허법 현황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특허분쟁에 대응코자 다음과 같이 국제특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1994. 6. 28(화) 13 : 30~18 : 00
2. 장소 : 섬유회관 17층 대회의실

3. 강사 : Finnegan Henderson Law Firm
 - Robert J. Gaybrik 미국변호사
 - Roger D. Taylor 미국변호사
 - E. Robert Yoches 미국변호사
 신신 합동법률사무소
 - 선의찬호 변호사
4. 주요내용 : 멀티미디어 특허사례
 - Component 특허
 -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미국 특허법
 - 비 특허성 주제에 관한 판결 사례
 - 비 특허성 주제의 다른 근거
 - Means Plus Function의 구성요소
 - 공개 요구 조건
5. 참가비 : 1인 30,000원
6. 문의처 : 본회 정보산업과(Tel : 553-0941/7)
 담당자 : 김현기 대리

'94 산업기술 개발 제품전 참가안내

1. 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의 진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함
 - 국내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기술의 수요창출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함
 - 기술시장의 개설 등 산업기술진흥 여건조성을 통해 기술문화정착에 기여함
2. 전시기간
 - 1994. 10. 26(수)~10. 30(일)(5일간)
 - 개장시간 : 매일 10 : 00~17 : 00(공휴일 포함)
3. 전시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륙관(별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 『94 국제공장자동화기기전』과 병행 개최

***** 공지사항 *****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주최
- 4. 전시규모('94 국제공장자동화기기전 포함)
 - 전시장 총면적 : 15,060㎡(4,564평)
 - 산업기술개발제품전 : 3,200㎡(160부스 내외)
 - 참가예상규모 : 15개국 250개사 800품목 7,000점
 - 참관예상인원 : 200천명(국내 190천명, 바 이어 10천명)
 - 상담 및 계약목표액 : 7억불
- 5. 행사기관
 - 주최 : 상공자원부
 - 주관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6. 참가자격
 - 산업기술개발제품전
 - '92. 6~'93. 12 동안 기술 및 제품개발에 성공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산업기술 Techno-Mart
 - 개발에 성공한 우수기술을 기업 등에 이전을 원하는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술연구소, 대학
- 7. 문의처 : 본회 부품과(Tel : 553-0941/7)

멕시코 투자설명회 안내

Pedro Noyola 멕시코 상공부 차관의 방한을 맞이하여 멕시코 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멕시코 투자 환경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대표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1994. 6월 21(화) 14:00~16:00
2. 장소 :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48층)
3. 발표자 : Dr. Pedro Noyola 멕시코 상공부 무역 및 외국인 투자담당차관(Stanford大

- 경제학 박사)
- 4. 설명내용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소개
 - 외국인 투자법 개정내용 소개
 - 외국인 투자 보장 협정에 관한 설명
 - 멕시코의 OECD 가입에 따른 멕시코 최근 경제 동향
 - 질의, 응답
- 5. 참가비 : 없음
- 6. 참가신청 : 멕시코 대사관 상무관실
TEL : 775-5613/4

Malta 투자 세미나 안내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의 몰타 개발공사(Malta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는 한국전자업체의 대몰타 투자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회원사의 참가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1994. 6월 24(금) 11:00
2. 장 소 : 인터콘티넨탈 호텔
3.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국제부 통상과 박순길 대리(T. 555-6187)

신규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 안내

1. 용자개요
 - 용자규모 : 총 3,000억원('94년 신규조성자금)
 - 용자대상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등록된 기계설비를 국내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중소기업자(이 경우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단, 가정용으로 구입

***** 공지사항 *****

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및 시설대여 회사 업무 운용준칙에 의하여 여신 또는 시설대여가 금지되는 업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선용자 대상품목
 - 중소제조업체가 구매하는 기계설비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계설비
- 용자방식 : 외화(미불화) 표시 원화대출
- 용자기간 : 8년 이내(1/3이내의 거치기간 포함)
- 용자이율 : LIBOR(US 3개월물)+2.0%
- 용자비율 : 기계구입가액(부가세 제외)의 10%이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94. 6. 1~6. 30(우선용자 대상에 한함)
 - 2차 : '94. 7. 1~(제한없음)
 - ☞ 신청순서대로 지원하며 한도초과시는 신청접수 중단함
 - 구비서류 :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신청서류 및 실수요 요건·우선지원대상 입증서류(기계등록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청장소 및 대출취급
 - 전 금융기관(지방은행과 농·축·수협 포함, 단 주택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 398-6154/6, 8) 및 거래은행에 문의 바람
- 2. 등록대상품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써 '92년 1월 이후 개발완료한 기계설비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 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나. 정부의 정책사업(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

- 구조조정기금,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특정 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다.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신규로 개발된 기계설비
- 라. 정부기관으로 부터 형식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는 기계설비
- 마. 기술도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바. 주문제작에 의하여 새로이 설계된 품목으로서 신청접수기관이 확인한 기계설비
- 사. 플랜트성격을 가진 건설용 기계설비(이동형 기계설비로써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것은 제외)
- 아. 기타 신규개발기계류의 심의위원회가 신규 개발품으로 인정한 기계설비
- 3. 신청 및 등록기관
 - 가. 신청기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외 8개 기관
 - 나. 등록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4.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개발기계설비 등록신청은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하되 품목별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신규개발 기계설비 생산신고서(소정양식) 1부
 - 나. 신고품목 용도설명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1부
 - 다. 판매실적 확인서류 사본(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중 택일) : 모델 확인 가능요
 - 라. 등록대상품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예 : 특허등록증 사본, 기술도입신고서 사본)
 - 마.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카탈로그, 제품사전, 도면 중 택일/필요시 성능개선 비교표 등)

***** 공지사항 *****

5. 용자 대상품목 선정절차

- 가. 국산기계설비 개발업체는 개발품목의 양산 개시후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등 신청접수 기관에 개발품목을 신고한다.
- 나.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이외의 신청접수기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수시로 통보한다.
- 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검토결과(또는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완료된 품목을 용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한다.(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6. 용자대상품목 통보

- 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등록된 개발품목 및 업체명단을 매월 해당은행에 통보한다.
- 나. 용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업계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서를 우선 발급하고 차후에 용자대상품목 명부에 추가한다.
- 다. 해당은행은 용자대상품목 명부 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해서

용자대상으로 취급한다.

7. 기타

- 가. 개발완료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화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시점을 말하며 시제품을 제작후 수요자 및 품질검증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중에 있는 시제품은 개발완료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단순한 모델변경은 신제품 개발로 보지 아니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되거나 성능이 향상(생산성향상, 에너지절감 등)된 경우는 신제품 개발로 본다.
- 다. 외국 선발업체의 덤핑 등으로 산업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설비, 기타 상공자원부 장관이 특별히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92년 1월 이전 판매개시한 설비라도 용자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8. 문의처 : 본회 산업전자과(Tel : 557-2417)
담당 : 임호기 대리

국제 특허 세미나 개최 안내

본회는 UR협정 타결을 기점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특허문제를 미국 특허법 현황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특허분쟁에 대응코자 다음과 같이 국제특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 음-

- 1. 일시 : 1994. 6. 28(화) 13:30~18:00
- 2. 장소 : 섬유회관 17층 대회의실
- 3. 강사 : Finnegan Henderson Law Firm
-Robert J. Gaybrik 미국변호사

- Roger D. Taylor 미국변호사
- E. Robert Yoches 미국변호사
- 신신 합동법률사무소
- 선의찬호 변호사

4. 주요내용 : 멀티미디어 특허사례

- Component 특허
-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
-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미국 특허법
- 비 특허성 주제에 관한 판결 사례
- 비 특허성 주제외의 다른 근거
- Means Plus Function의 구성요소
- 공개 요구 조건

5. 참가비 : 1인 30,000원

- 6. 문의처 : 본회 정보산업과(Tel : 553-0941/7)
담당자 : 김현기 대리